

#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

[ 전부개정 2013. 8. 1  
훈령 제85호 ]

- 일부개정 2013. 12. 31 훈령 제87호
- 일부개정 2014. 4. 18 훈령 제91호
- 일부개정 2015. 1. 9 훈령 제96호
- 일부개정 2015. 7. 10 훈령 제101호
- 전부개정 2016. 9. 9 훈령 제108호  
(제명개정)
- 일부개정 2016. 10. 28 훈령 제109호
- 일부개정 2016. 12. 30 훈령 제110호
- 전부개정 2017. 3. 31 훈령 제114호
- 일부개정 2017. 6. 9 훈령 제115호
- 일부개정 2017. 6. 30 훈령 제117호
- 일부개정 2018. 3. 30 훈령 제120호
- 일부개정 2018. 8. 24 훈령 제122호
- 일부개정 2018. 11. 30 훈령 제123호
- 일부개정 2019. 12. 26 훈령 제133호
- 일부개정 2020. 6. 25 훈령 제136호
- 일부개정 2020. 12. 29 훈령 제141호
- 일부개정 2021. 12. 28 훈령 제147호
- 일부개정 2022. 6. 24 훈령 제150호
- 일부개정 2022. 12. 29 훈령 제156호
- 일부개정 2023. 1. 13 훈령 제157호
- 일부개정 2023. 2. 24 훈령 제159호
- 일부개정 2024. 2. 27 훈령 제167호
- 일부개정 2025. 1. 17 훈령 제171호
- 일부개정 2025. 6. 11 훈령 제174호
- 일부개정 2025. 6. 27 훈령 제175호
- 일부개정 2025. 12. 29 훈령 제1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증평군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·면 및 증평군의회 의정원, 사무분장, 하부조직의 명칭 및 Task Force팀제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배정) 「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제3조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무원: 별표 1
2. 임기제공무원: 별표 2
3. 삭제 <2022. 12. 29>

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

[전문개정 2021. 12. 28]

제3조(정원의 조정) 정원관리기관의 장은 기능별 업무량이 변동되거나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팀별로 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8>

[제목개정 2021. 12. 28]

제4조(사무분장) ① 정원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급·전문성·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>

② 정원관리기관의 장은 사무를 분장하거나 기존의 사무분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>

제5조(팀의 명칭 등)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·직렬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2. 12. 29>

제6조(Task Force팀제 운영) 긴급한 업무발생 등 특수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팀을 둘 수 있다.

부칙(2017. 3. 31 훈령 제114호 전부개정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6. 9 훈령 제115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6. 30 훈령 제117호)

이 훈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3. 30 훈령 제120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8. 24 훈령 제122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1. 30 훈령 제123호)

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훈령 제133호)

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6. 25 훈령 제136호)

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훈령 제141호)

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12. 28 훈령 제147호)

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의회 정원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6. 24 훈령 제150호)

이 훈령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훈령 제156호)

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. 13 훈령 제157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2. 24 훈령 제159호)

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2. 27 훈령 제167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1. 17 훈령 제171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6. 11 훈령 제174호)

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25. 6. 27>

부칙(2025. 6. 27 훈령 제175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

부칙(2025. 12. 29 훈령 제176호)

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공무원 정원표 <개정 2025. 12. 29>

[별표 2] 임기제공무원 정원표 <개정 2025. 6. 11>

[별표 3]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렬·직급 <개정 2025. 12. 29>

[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화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](#)